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30일, 이수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3. 11.)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에 사상 최고로 외국인
환자 방문객 수가 117만명을 기록하여 2023년 60만명에서 거의 두 배
가 증가할 정도로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다만, 외국인환자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어 국내 의료 이용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하나, 현행법상 국내·외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 허용하고 있어 국내 의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환자를 직접 진료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대한 국내 진료 사전·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2025. 12. 23. 개정 공포(법률 제21238호)된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함에 따라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성에 맞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비대면 진료 수행기관 및 그 절차, 방법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고 대상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과,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비영리법인이나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주체가 여러 형태로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재를 고려하여 의료 해외진출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성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무 부과는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비영리법인·회사의 행정부담을 가중하는 규제적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안 제4조제1항제3호는 “「상법」 제170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170조에서는 ‘회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의의’와 ‘회사의 성립’에 관한 사항이 각각 규정된 같은 법 제169조와 제172조를 인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등에서 ‘기업’을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로 규정한 입법례가 있음.

한편 2025년 12월 법률 제21238호로 공포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특정한 요건하에서 ‘의료기관 밖’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

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에 해당하는 진료인 ‘비대면진료’를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제34조의2 신설)되었고,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용어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변경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인이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하는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법 제3조에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의 실시 주체와 절차·방법 등을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국인환자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제4항), 초진환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제2항제2

호), 대형 병원들이 수익성 높은 외국인환자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게 되어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이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안 제16조의2제3항이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구축 예정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에도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또는 명칭은 같더라도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에 특화하여 의약품 처방에 필요한 기능이 포함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별개로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의7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2항제1호의3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 제16조의2제5항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수탁한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달리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근거가 개정안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에 따른 비대

면진료지원시스템이 보유하게 될 정보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보유할 정보가 중요성이나 보호가치 등의 측면에서 동등하다면 개정안에도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계된 조문들 간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안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과태료를 「의료법」에 맞추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계된 조문들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과태료를 「의료법」에 맞추어 보완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민법」”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70조에 따라 설립된”을
“제170조에서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
를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안 제16조의2제1항 중 “유선·무선·화상통신”을 “유무선 통신, 화상
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급 이상”을 “같은 법 제3조제
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하여 「의료법」 제34조의7(전
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지
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의약품의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는 의약품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을 “「의료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
시스템과 상호 연계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비대면진료지
원시스템”을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로 하고, 같은 항 후
단 중 “소요 비용”을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을 “업무를”로, “대하여는”을 “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으로 본다.

제18조의2 전단 중 “다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을 “따라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안 제18조의3 중 “해외진출,”을 “해외진출 및”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의료기관이”를 “자가”로, “제5조를”을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5조를”로 한다.

안 제24조제1항제8호 중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6조”로,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를”을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6조의2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한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본문 중 “제28조”를 “제27조의2, 제28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2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 ----- <u>다음 각 호의 자</u> ----- ----- ----- -----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상법」 제170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 ② 제1항제1호----- ----- ----- ----- -----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제1호에 해당하는 <u>지</u> 아니하는 「민법」----- ----- 3. -----제170조에서 정한----- -----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		

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u>의료기관의 개설자</u>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생략) <u><신 설></u>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③·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 ----- -----<u>신고를 한 자</u>----- ----- -----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 ----- ----- ----- ----- ----- ----- -----
--	---	--

4조의7(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제외
한다)에 따른 비대
면진료지원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
스템에는 의약품
처방에 필요한 기능
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은 비대면진료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그 소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
스템 구축·운영을

정보시스템(의약품
의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외국
인환자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이라
한다)-----.
----「의료법」 제
34조의7제1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
원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④ -----
--외국인환자비대
면진료지원시스템
의-----
-----.
-----비용-----
-----.

⑤ -----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료 법」 제34조의7제4 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 다. <후단 신설> ⑥ 외국인환자 비 대면 진료를 하는 자는 이 법 및 환 자 거주국 현지 법 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외국인환자 비 대면 진료의 세부 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 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 ----- 관하여는----- ----- ----- ----- --. 이 경우 “비대 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 달시스템”은 “외국 인환자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으로 본다. ⑥ (개정안과 같음) ⑦ ----- ----- ----- ----- 외국인환자비대면 진료지원시스템의 -----필요한-----
--	---	---

	<u>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18조의2(협조 요청)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u>의료 해외진출 신</u>		<u>따라 의</u>
<u>고 의료기관의 장,</u>		<u>료 해외진출의 신</u>
외국인환자 유치의		<u>고를 한 자</u>
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		
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		
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		
조하여야 한다.		

[illegible]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9. · 10.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제27조의2(벌칙) 제16</u>
		<u>조의2제5항에 따라</u>
		<u>준용되는 「의료</u>
		<u>법」 제34조의7제4</u>
		<u>항 또는 제6항을</u>
		<u>위반한 자는 5년</u>
		<u>이하의 징역 또는</u>
		<u>5천만원 이하의 벌</u>
		<u>금에 처한다.</u>
제30조(양벌규정) 법		제30조(양벌규정) --
인의 대표자나 법		-----
인 또는 개인의 대		-----
리인, 사용인, 그		-----
밖의 종업원이 그		-----
법인 또는 개인의		-----
업무에 관하여 제2		-----제
8조 및 제29조의		<u>27조의2, 제28조--</u>
위반행위를 하면		-----
그 행위자를 벌하		-----
는 외에 그 법인		-----
또는 개인에게도		-----
해당 조문의 벌금		-----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
인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에 관
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2. (생 략)

<신 설>

-----.

-----.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
음)

2의2. 제16조의2제5
항에 따라 준용되
는 「의료법」 제
34조의7제5항 후
단을 위반하여 자
료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3) -----

-----제2
항 제2호 및 제2호
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신고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각각 “신고를 한 자”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제16조의 제목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라 한다)”를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을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의약품의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

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으로 본다.

⑥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하는 자는 이 법 및 환자 거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의 세부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전단 중 “다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을 “따라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의료기관이”를 “자가”로, “제5조를”을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5조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을 “외국인환자비대면협진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6조의2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본문 중 “제28조”를 “제27조의2, 제28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2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u>신고인</u>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 <u>다음</u> <u>각 호의 자</u> ----- -----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u>의료기관의 개설자</u>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u>회사</u> ② <u>제1항제1호</u> ----- ----- ----- ----- -----. ③ ----- ----- ----- <u>신고</u> <u>를 한 자</u> -----. ④ ----- ----- -----

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
로 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
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
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
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
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
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
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신고를 한 자

⑤

신고를 한 자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①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

-----.

③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의약품의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⑦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의 세부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비대면 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llegible]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
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
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
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
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 -----

-----.

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
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
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시정명령) ① -----

--자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
기관의 개설자가 제5조를----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u>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한 경우</u>	-----
<u><신설></u>	-----
9. · 10.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8. -----
<u><신설></u>	----- <u>외국인환자비대면협진을</u> -----
	8의2. 제16조의2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u>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한 경우</u>
	우
	9. · 10.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28조</u>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30조(양벌규정) -----

	-- <u>제27조의2, 제28조</u> -----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

-----.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
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현행과 같음)

③ -----

-----.
-----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 . 징수한다.	----- -----.
------------------------------------	-------------------------